

## **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**

▶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산림청	사유림경영소득과	과 장 김용진	042-481-4190
		사무관 양유진(생산)	042-481-4194
		주무관 김승엽(생산)	042-481-4209
		사무관 전동진(유통)	042-481-4206
		주무관 이상현(유통)	042-481-4207
산림조합중앙회	상호금융여신부 정책자금팀	콜센터	1544-4200

## I 사업 개요

### 1. 목적

-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·가공·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·가공·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
- 생산·가공·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·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
-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

### 2. 근거법령

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4조
-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8조~제9조, 제17조

### 3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합 계(농특회계)	159,982	133,532	150,022	142,766	111,248
- 보 조	47,034	36,688	42,638	36,440	27,567
- 용 자	31,059	28,371	31,127	34,240	27,872
- 지방비	47,178	40,457	47,346	42,189	31,936
- 자부담	34,711	28,016	28,911	29,897	23,873

#### 4. 사업별 보조비율 및 주요지원 내용

※ 지원자격, 지원조건 등은 분야별 세부내용 참고

세부사업	내역사업	보조비율(%)				지원내용 (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준)	비고
		국비	지방비	융자	자부담		
임산물생산기반조성	가.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						
	가-1. 토양개량제지원	70	30	-	-	○ 석회질비료(소석회, 석회고토, 부산석회)·규산질비료(규산질), 목재제품(목탄, 목초액)	
	가-2. 유기질비료지원	1,400원	600원 이상		초과 금액	○ 유기질비료	
		1,000~1,400원	600원 이상		초과 금액	○ 부숙유기질비료	
	나.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					○ (산림작물생산단지) 생산기반시설 규모화·현대화 지원 * 울타리, 관정·관수, 감시시설, 작업로 등 임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반시설 ○ (산림복합경영단지) 기존입목에 대한 숲가꾸기(모두베기 제외)+생산기반시설 규모화·현대화 지원	
	나-1. 공모사업	40	20	-	40	○ (노지재배) 1억원 ~ 5억원 이하 ○ (시설재배) 1억원 ~ 7억원 이하	
	나-2. 소액사업	20	30	30	20	○ 1억원 미만	
	다. 생산기반조성	20	30	30	20	○ 1억원 미만 ○ 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화(보완) 지원 * 생산장비(차량은 대상 아님), 산림버섯재해예방시설(보완), 작업로 보수, 수실류 수형조절	

세부 사업	내역사업	보조비율(%)				지원내용 (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준)	비고
		국비	지방비	용자	자부담		
청 정 임 산 물 이 용 중 진	가.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(공모사업)	50	20	-	30	○ 유통체계 규모화·현대화를 위해 건축, 가공장비, 선별·포장, 유통장비 등 지원 - (일반) 국비1~5억원 이하 - (거점) 국비5~10억원 이하	
	나.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(공모사업)	50	20	-	30	○ 전문가공업체 육성을 위한 2차 가공·시설장비 지원 - 20억원 이하(국비10억원 이하)	
	다. 임산물 상품화 지원 (소액사업)	20	30	30	20	○ 표준규격 내·외부포장재, 포장 디자인 개선 지원 등 - 50백만원(국비10백만원)	
	라.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(소액사업)	20	30	30	20	○ 유통시설 장비 지원 - 유통 화물차량, 유통장비 및 기자재, 저장·건조시설, 가공장비 등 - 1억원 미만	
	마.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	40	60	-	-	○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·품질 검사 수수료 지원 * 1인당 5건까지, 1건당 38만원	

※ 국비:지방비:용자:자부담에서 '자부담'은 '용자'로 대체할 수 없음. 다만, '용자'는 '자부담'으로 대체 가능(20:30:30:20 → 20:30:-:50)

※ 소액사업의 경우, 사업대상자는 2개 이상의 내역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, 총사업비의 합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함. ㉠ 임산물생산기반조성 + 임산물상품화지원 < 1억원

## II 공통사항

### 1. 사업 대상자

-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 [별표2] “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”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, 농업경영체(임업경영체 포함), 임업후계자, 독립가,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 또는 생산자단체
- 선별·가공·유통·상품화를 하거나, 하고자 하는 임업인, 농업경영체(임업경영체 포함), 생산자단체

<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>	
종 류	품 목 명
수실류(14개)	밤, 감(뽕은감), 잣, 호두, 대추, 은행, 도토리, 개암, 머루, 다래, 복분자딸기, 산딸기, 석류, 돌배
버섯류(8개)	표고, 송이, 목이, 석이, 능이, 싸리, 꽃송이버섯, 복령
산나물류(12개)	더덕, 고사리, 도라지, 취나물, 참나물, 두릅, 원추리, 산마늘, 고려엉겅퀴(곤드레), 고비, 어수리, 눈개승마(삼나물)
약초류(18개)	삼지구엽초, 삼주, 참쑥, 시호, 작약, 천마, 산양삼, 결명자, 구절초, 약모밀, 당귀, 천궁, 하수오, 감초, 독활, 잔대, 백운풀, 마
약용류(20개)	오미자, 오갈피나무, 산수유나무, 구기자나무, 두충나무, 헛개나무, 음나무, 참죽나무, 산초나무, 초피나무, 옷나무, 골담초, 산겨릅나무, 산사나무, 느릅나무, 황칠나무, 꾸지뽕나무, 마가목, 화살나무, 목단
수목부산물류(17개)	수액(樹液), 나뭇잎, 나뭇가지, 나무껍질, 나무뿌리, 나무순 등 나무(대나무류를 포함한다)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
관상산림식물류(6개)	야생화, 자생란, 조경수, 분재, 잔디, 이끼류
그 밖의 임산물	위 품목 외에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(목재제품을 포함한다)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

※ ‘그 밖의 임산물’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

- 그 밖의 임산물의 요건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것
- 그 밖의 임산물 지원 시에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
- 그 밖의 임산물로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(수실류, 버섯류, 산나물류 등)의 지원기준·지원내용 등을 준용
- 굴취허가, 덩굴류제거사업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칩을 활용할 경우 유통분야(유통기반조성사업)에 한하여 지원 가능

※ 농식품부 등 타부처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는 소득지원 대상 임산물에 포함되더라도 지원 제외(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)

(예 :미선나무, 맥문동 등 산림에서 생육 중인 것으로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소득지원 가능, 단 농식품부 등 타부처 자금이 지원 된 경우는 지원 불가)

## 2. 지원자격 및 요건

### ○ 지원 자격

구 분		지 원 자 격
임업인 등 * 개인에 한함	임업인	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임업인
	농업경영체 (임업경영체 포함)	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* 임산물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
	임업후계자	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
	독립가	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에 의한 독립가
	신지식농업인 (임업분야)	「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」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
생산자단체		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 등)

#### < 우선 지원 >

-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(단, 법인은 「기본규정」 제35조 제9항 별표6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)
- 농업재해보험(농작물 및 농업인)에 가입한 생산자 및 단체(보험가입기간 미도래 시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)
  -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 제28조(보험가입의 촉진 등)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·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,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.
-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**생산량이 10%이상 증가**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·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
- 저온, 가뭄·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: 표고재배사 냉·난방 시설, 관수·관정시설, 비가림시설, 냉해예방시설(방상팬, 미세살수장치 등), 지주대, 지지대, 받침대 등
- **산촌거점권역(시·군)\***의 임업인, 생산자단체 등이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응모시 가점부여
  - \* 산촌거점권역 : 괴산군, 울진군, 인제군, 진안군, 평창군 5개 지역
- 「**임업진흥법 시행령**」 제17조의2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임산물(산양삼)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 또는 단체
- (**의무·임의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**)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임업인,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지원
  - 뚝은감 : (사)한국뚝은감협회(02-2080-6380)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 (시·군 담당자)
  - 밤 : (사)한국밤재배자협회(041-835-0067)에 거출금 고지 및 납부 확인(시·군 담당자)
- '**K-FOREST FOOD**'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 및 단체, 이달의 임업인 선정자
- **청년임업인**(25년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~만 40세 미만)의 연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
- 각 지역별 특구로 지정된 임산물에 대해 우선 지원
- 임가경제조사와 임산물생산조사, 임산물소득조사\*에 패널로 참여하고 있는 표본임가
-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지정된 재배지
- 스마트 임업 기계장비 및 시설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(
  - \* 온·습도 센서 및 자동 조절장치, 동력수확기, 자동전지가위 등

**< 지원 제한 >**

- 「보조금법」 제31조의2,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35조, 제78조 준용
  - (5년)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
  - (3년)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
  - (2년)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
  - 사업자로 통보된 이후 자금부족, 사업변경,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,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(다만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)
    - \* 사업 시행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 제한 면제
    - \* 제한기간은 사업 포기일로부터 다음 신청일까지로 산정
- (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)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
  - 뚝은감 : (사)한국뚝은감협회(02-2080-6380)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 (시·군 담당자)

**< 참고 · 주의사항 >**

- 개별 사업별로 지원 자격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별도로 명시된 자격 준수 의무
- 확인방법 : 등기부등본, 품목 출하실적, 교육이수증, 근로계약서,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
-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,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
- 사업장(산지, 시설 등)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
-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「산지관리법」 등에 따른 인·허가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, 인·허가 여부에 따라 보조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
- 계획기간내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이월 불가(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)
- 소모성 비용\*은 지원 안됨(안전화, 장갑, 토양개량제, 비료, 세금(공과금 등) 납부 등 기반시설 외 지재)
- 산림청 국가승인통계 중 임가경제조사, 임산물생산비조사, 임산물소득조사 패널로 참여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이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업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

**○ 지원요건**

**① 재배경력 요건**

- (재배경력 1년 미만) 임업인 등이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하며, 산림소득분야 교육\*을 이수하여야 보조금 교부됨

\* 산림소득분야 협·단체, 임업진흥원, 산림조합, 산림교육원, 대학교 등 산림·임업분야 전문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(고등학교·대학교 산림·임업분야 전공자 및 산림·임업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, 임업후계자 교육과정 이수자는 제외) 자에 한해 보조금 교부

\* 온라인 강의는 이수 시간의 50%만 인정되며,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교육이수 가능(사업 시행연도 보조금 교부 전 3월 말까지 이수 조건이며, 동 기간까지 교육 미 이수자는 지원 제외)

- (재배경력 1년 이상) 임업인 등이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(교육이수 무관)
- (재배경력 2년 이상) 재배경력 2년 이상인 임업인 등 중 임업후계자·독립가·신지식농업인·생산자단체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인 공모사업 신청 가능

- \*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, 임산물 판매 전자세금계산서·납품확인증 등을 통해 임업경영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재배경력 인정
- \*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또는 공모사업지침에 별도의 강화된 지원요건이 있는 경우 강화된 요건을 우선 적용 ㉠ 버섯재배시설, 톱밥배지 생산시설 등

### ② 영농조합법인 요건

-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은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35조제9항 별표6 ‘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’을 적용하며, 자본금이 1억원 이상,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

- \*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‘농업인’이 참여(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,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)해야 함

### ③ 대상토지 요건

- 대상토지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이거나 임대받은 토지여야 하며,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함  
[단, 임업인 등에 한해 ‘등기 비대상’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]

- 임대받은 토지의 경우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·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

- \*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「4. 청정임산물이용증진」 사업은 미적용)

- \* 임업인 등의 경우 ‘등기 대상 시설물’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하면 가능, ‘등기 비대상 시설물’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
- \* 생산자단체는 ‘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’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; 「기본규정」 별표6 ‘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’ ㉠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

### ④ 유사자금\* 등 지원제한 (「기본규정」 제35조제8항제3호)

-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 원(국비+지방비)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(시·군·구에서 실시)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지원함
- 유사자금 2회 지원 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 결정(5년간 최대 3회까지만 지원)

- \* 유사자금 :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(토지, 건축물 등)에 투자되는 것
- \* 「기본규정」 제정·시행일('14.1.1.)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

### ⑤ 한도, 단가변경 등의 적용

- '24년 선정된 '25년 사업대상자가 변동된 한도·단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 국비 배정액, 지방비 확보액,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'25년도 지침을 기준으로 변경·적용할 수 있음

- '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는 '25년도 지침을 적용함

### 3. 사업 관련 계약

- 사업의 계약은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21조,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57조에 따라 추진
  - \* 2개 이상 사업종이 복합된 산림소득사업은 사업종별로 실시설계를 하여 각각 계약
  - \* 종자 파종 또는 종묘 식재는 용역 구매의 기준을 준용
  - \* 계약을 부당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 불가(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21조제7항)
  - \* 수의계약 대상으로 수의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확인 必

#### < 계약 방법 >

- 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(부가가치세 제외) 또는 용역,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,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,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
  - ①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‘나라장터’)을 이용하여 공고·입찰·계약체결(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체결
    - 계약의 방법(제한경쟁, 협상에 의한 계약 등), 예정가격, 규격서, 투찰제한 등은 보조사업자 직접 결정 가능
  - ②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 「지방계약법」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대행 요청 가능
    -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(事後精算)
  - ③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
    - \* 조달청장은 「국가계약법」을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계약법」을 준수
- 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수행(농림부 기본규정 제57조제5항)

### 4. 사후관리

- 중요재산이 없는 산림소득사업이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함
-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「보조금법」 제35조의2(중요재산의 부기등기) 및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60조(중요재산의 등록 등)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
  - \* 단, 등기대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
- 중요재산은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에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 제공 불가
  - \* 비닐하우스골조 10±3년, 관정·관수·배수시설 5±2년, 산림경영관리사 6년 등

### 5. 예산통합

- 세부사업 각각에 포함되는 아래의 내역사업은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집행 가능(예산 규모의 20% 초과 시 산림청 협의)

세부사업	내역사업
임산물생산기반조성	임산물생산기반조성,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,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
청정임산물이용증진	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, 임산물유통기반 지원

### Ⅲ 임산물생산기반조성

담당 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산림청	사유림경영소득과	사무관 양유진 주무관 김승엽	042-481-4194 042-481-4209

#### 1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

\*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인 토양개량제·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'25년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'26년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.

#### 가 토양개량제

사업대상자	대상자 선정	선정 방식	보조비율(%)				신청기간
			국고	지방비	용자	자부담	
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단체	지방자치단체	자체	70	30	-	-	전년도 6~7월

- **사업목적** : 산성화된 토양을 적정 산도로 개량하고, 토양 내 유효규산 함량을 개량하여 지력 회복을 통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
- **지원내용** : 석회질비료, 규산질비료, 목재제품
  - (석회질비료) 소석회, 석회고도, 부산석회/ (규산질비료) 규산질/ (목재제품) 목탄, 목초액
  - \* 비료종류는 비료 공정규격 설정(농진청고시 제2024-28호) 별표1, 2에 따름
  - \* 목탄은 목재제품 규격·품질검사결과에 따른 품질표시가 되어 있는 제에 한하여 지원
- **지원조건** : 지원받은 토양개량제는 해당 연도에 모두 소비해야 함
  - \* 지자체 공무원 또는 이장 등의 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 보조금 정산
  - \* 지자체에서 일괄 직접구매 후 사업대상자에게 배부 가능
- **지원제외** :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,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 (예)부산석고), 타기관 또는 지자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중복
- **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**

구분	지원 한도		지원 단가
수실류	(밤) 총사업비 504천원/ha	(밤 외) 총사업비 756천원/ha	* 실 단가를 적용하되,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(조달단가 우선 적용)
관상산림 식물류	(잔디) 총사업비 1,150천원/ha * 잔재비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	(잔디 외) 총사업비 4,750천원/ha * 관상식물·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	
기타 임산물	(수실류, 관상산림식물류 이외 임산물 품목) 총사업비 450천원/ha		

\* (예) 밤나무(사양토pH4.7→pH5.5)임지에 입상소석회 기준 지원한도 : 5,600원/20kg, 90포/ha

**나**      **유기질비료**

사업대상자	대상자 선정	선정 방식	보조금액				신청기간
			국고	지방비	용자	자부담	
임업인 등, 생산자단체	지방자치단체	자체	1,000~1,400원	600원 이상	-	초과 금액	전년도 6~7월

○ **사업목적** : 제조제,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억제하여 토양산성화 방지 및 지력 회복을 통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

○ **지원내용** : 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

- (유기질비료) 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비료, (산양삼에 한하여)어박, 골분, 대두박
- (부숙유기질비료) 가축분퇴비, 퇴비

\* 녹색제품(환경표시 인증제품, GR마크 인증제품) 우선 구매 유도  
 \*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

○ **지원조건** : 지원받은 유기질비료는 해당 연도에 모두 소비해야 함

\* **지자체 공무원** 또는 **이장** 등의 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 보조금 정산

○ **지원단가 및 한도**

- 지원단가 :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정액 지원

(단위: 원/20kg)

구분	국고			지방비
	특등급	1등급	2등급	
유기질비료	1,400			600이상
부숙유기질비료	1,400	1,200	1,000	

- 지원한도 : ‘임산물 표준재배 지침’ 등에 따라 품목별 적정 시비량 적용

○ **지원제외** : 타기관 또는 지자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중복

\* 농식품부의 ‘유기질비료 지원사업’ 등

## 2

##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

구분	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	
	공모사업	소액사업
사업대상자	임업후계자, 독립가,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, 생산자단체	임업인 등, 생산자단체
대상자 선정	지방자치단체	지방자치단체
보조비율	국고 40%, 지방비 20%, 용자 -, 자부담 40%	국고 20%, 지방비 30%, 용자 30, 자부담 20%
신청기간	전년도 4~6월	전년도 6~7월 중
사업 목적	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산화· 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	작업로,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
지원 내용	<p>종자·종근 구입, 임내정리 및 식재, 관정·관수 시설, 보호울타리, 감시 시설, 작업로, 모노레일, 임산물 저장·건조시설, 비닐하우스, 온실, 자동화 시설, 기계장비, 산림경영관리사, 숲가꾸기(숙아베기, 천연림보육, 풀베기, 덩굴제거, 가지치기, 어린나무가꾸기, 산물수집 등) 등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해당 보조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, 가지치기 등 관리 비용은 지원 불가</li> <li>* 사업계획에 숲가꾸기 포함시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(어린나무가꾸기의 경우 3년) 경과하지 않은 사업지에는 숲가꾸기 지원 불가</li> <li>* 숲가꾸기가 필요한 사업지는 가급적 사업시행 전 ‘산림자원육성·관리(농특)’ 단위사업 예산의 ‘숲가꾸기’과 연계하여 선행하고, 부득이한 경우 본 사업으로 숲가꾸기를 실행하거나, 풀베기 등 가벼운 사업 위주 지원</li> </ul>	

구분	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									
	공모사업	소액사업								
지원 한도 (총사업비 기준)	(노지재배) 1억원 ~ 5억원 이하 (시설재배) 1억원 ~ 7억원 이하  * 2년간 분할지원 가능 * 설계·감리비(8% 이하), 기반 조성비(65% 이상), 숲가꾸기(20% 이하) 기타 부대비(7% 이하) 등으로 구성 * 종자·종묘 구입비와 식재 인건비는 기반조성비에 포함	1억원 미만  * 단일사업으로 운영 가능(종자·종묘 구입과 인건비는 단일사업 불가) * 종자·종묘, 모노레일 등에 대하여 감리 가능 * 숲가꾸기는 전체 사업비의 20% 이하								
기타	- 공모사업 지원조건(품목별 면적기준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품목의 종류</th> <th>세 부 내 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약용류·약초류·산나물류·수실류·수목부산물류</td> <td>(노지) : 25,000㎡/개소 이상 (시설) : 1,000㎡/개소 이상</td> </tr> <tr> <td>산림버섯류</td> <td>(노지 : 송이산가꾸기 포함) 3,300㎡/개소 이상 (시설 : 재배시설, 톱밥배지 생산시설) 1,650㎡/개소 이상</td> </tr> <tr> <td>관상산림식물류</td> <td>(노지) 10,000㎡/개소 이상, (시설) 1,000㎡/개소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*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지자체에서 판단(내부결재 필요)하여 사업 지원 가능 * 2개 이상의 종류를 동시에 지원 받고자 할 경우, 각각의 사업면적이 면적기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(예시) 약용류·버섯류 생산시설을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, 각각의 사업면적이 약용류 25,000㎡/개소 이상, 버섯류 3,300㎡/개소 이상이어야 함  -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은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, 연접지에서 산림사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행  * 파쇄, 훈증,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중 숲가꾸기 사업 30%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		품목의 종류	세 부 내 용	약용류·약초류·산나물류·수실류·수목부산물류	(노지) : 25,000㎡/개소 이상 (시설) : 1,000㎡/개소 이상	산림버섯류	(노지 : 송이산가꾸기 포함) 3,300㎡/개소 이상 (시설 : 재배시설, 톱밥배지 생산시설) 1,650㎡/개소 이상	관상산림식물류	(노지) 10,000㎡/개소 이상, (시설) 1,000㎡/개소 이상
품목의 종류	세 부 내 용									
약용류·약초류·산나물류·수실류·수목부산물류	(노지) : 25,000㎡/개소 이상 (시설) : 1,000㎡/개소 이상									
산림버섯류	(노지 : 송이산가꾸기 포함) 3,300㎡/개소 이상 (시설 : 재배시설, 톱밥배지 생산시설) 1,650㎡/개소 이상									
관상산림식물류	(노지) 10,000㎡/개소 이상, (시설) 1,000㎡/개소 이상									

### 【 공모사업 유의사항 】

- (사업대상) '2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
  - \* '24년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, '25년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코자 하는 경우, 해당 지자체에 사전승인 후 추진 가능
- (사업비율)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(객관적 자료 제시)
  - \* 단, 숲가꾸기 사업 비율은 심의 당시 기준 적용
  - \* 산림소득 생산분야 공모사업 계획변경 승인기준(2021.12.23.)에 따라 처리(309p 참고)
  - \* 토목 공사비 : 기반 조성비의 10% 이하로 가능하며,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(절토, 성토 등)은 지원 제외(시설 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)
  - \* 기타 부대비 : 사업 타당성 평가, 컨설팅, 정산보고서 검증 등 행정비용은 집행이 가능. 다만, 인·허가, 측량 비용 및 소모성 비용\* 등은 지원 불가
    - 소모성 비용 : 안전화, 장갑, 토양개량제, 비료, 세금(공과금 등) 납부 등
- (기타 유의사항)
  - \*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은 감리 의무화
  - \*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관련 교육 참석 의무(세부일정 별도 안내)
  - \*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 제한
  - \*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, 총 사업비에서 제외

### ○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(공모·소액)

#### ① 인건비

- (기준단가) 2025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(대한건설협회)
  - \* 작업여건에 따라 별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
  - \* 다른 기준 또는 금액을 달리 할 경우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 후 집행 가능
  - \* 자가시공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,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5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, 산지정리, 제초작업, 묘목식재, 작업로시설, 활엽관목 제거, 숙아베기 등이 해당될 수 있음.
- (지원한도) 연간 사업비가 총사업비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
  - \* 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·비속 중 1인에 한함

○ 제58조제1항제6호 :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(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·비속 중 1인에 한함)을 지출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가.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

나.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

## ② 종자·묘목대

- (기준단가) 실단비를 적용하되, 2개 이상 견적서 기준

- \* 「종자산업법」 제37조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‘종자업’을 등록한 자이거나,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‘생산·수입판매 신고’를 한 자에게서 구입
- \* ‘그 밖의 임산물’에 해당되어 지원받은 경우의 품목은 종자·종묘 구입비 지원 불가
- \* 산양삼 종자·종묘 구입비 지원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파종·식재하고자 하는 토양과 종자·종묘의 생산적합성조사가 완료되어야하며, 20만원/kg 이하로 지원
- \*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경우, 1인당 5건까지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지원금 지원 (청정임산물이용증진 마.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참고)
- \* 조경수 묘목의 수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임업관측정보(조경수관측월보)에서 확인 가능한 수종으로, 규격은 동 정보의 수종별 규격 미만에 한하여 인정·지원

- (지원한도)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, 소액사업은 총사업비의 20% 이하

- \* 공모사업 시 산양삼 종자·종묘는 총사업비 5천만원 이하까지 가능  
(예) 두릅 종자 2천만원 구매시 산양삼 종자는 3천만원까지 추가 구매 가능

## ③ 표고버섯 자목 구입

- (지원요건)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, 최소 330㎡(100평)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, 노지에서 1,000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

- \*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

- (지원주기) 2년 1회 지원가능

- \* (예) '24년 지원받았다면, '26년 지원 가능('25년에 사업 신청)

- (지원한도)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% 이하,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

- (지원단가) 본당 금액 5,000원(W 12cm × L 120cm)

- \* 현장여건에 따라 지원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(전자세금계산서 등)

- (지원수량) 330㎡당 1,000본

- \* 단,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

- (교부결정 전 구입)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표고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(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,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)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, 교부결정 이후,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·정산가능

- \*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

#### ④ 꽃송이버섯 자목 구입

- (지원요건) 꽃송이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200㎡(60평) 이상의 꽃송이버섯 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,000본 이상의 꽃송이버섯 자목에서 꽃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
- \*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
- (지원주기) 2년 1회 지원가능 \* (예) '24년 지원받았다면, '26년 지원 가능('25년 신청)
- (지원한도)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% 이하,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
- (지원단가) 본당 금액 1,000원(W 15cm 이상 × L 15cm 이상)
- \* 현장여건에 따라 지원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(전자세금계산서 등)
- (지원수량) ㎡당 본수 36본(총적 또는 재배상 기준)
- \* 단,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
- (교부결정 전 구입)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(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, 증빙서류 등)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, 교부결정 이후,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·정산가능
- \*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

#### ⑤ 복령버섯 자목 구입

- (지원요건) 복령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㎡(100평) 이상의 복령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
- \*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
- (지원주기) 2년 1회 지원가능 \* (예) '24년 지원받았다면, '26년 지원 가능('25년 신청)
- (지원한도)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% 이하,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
- (지원단가) 본당 금액 2,000원(W 15~20cm × L 30cm)
- \* 현장여건에 따라 지원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(전자세금계산서 등)
- (지원수량) 330㎡당 577본
- \* 단,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
- (교부결정 전 구입)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(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, 증빙서류 등)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, 교부결정 이후,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·정산가능
- \*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

## ⑥ 산림버섯 톱밥배지 구입

- (지원요건)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톱밥배지를 이용한 산림버섯을 1년 이상 재배 중인 자로서,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국내에서 개발한 종균(품종보호출원 완료)을 접종하여 만든 산림버섯 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(보습배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)

㉠ 바닥면적 최소 330㎡(100평) 이상의 톱밥배지를 이용한 산림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

㉡ 6,000봉 이상 산림버섯 톱밥배지로 산림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

\*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

\* 종자업 등록하거나, 생산·판매신고로 배지판매가 가능한 곳에서 구입한 경우만 지원

- (지원주기) 2년 1회 지원가능

\* (예) '24년 지원받았다면, '26년 지원 가능('25년에 사업 신청)

- (지원한도)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% 이하,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

- (지원단가) 봉당 기준금액 : 접종배지 680원/kg, 갈변(접종·배양)배지 900원/kg

\* 현장여건에 따라 지원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봉당 지원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(전자세금계산서 등)(배지 무게, 형태 차이를 반영)

- (지원수량) 바닥면적 330㎡당 ·(원통형) 10,000봉, (봉형) 6,000봉, (사각) 8,000봉

\* 단,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

- (교부결정 전 구입)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(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, 증빙서류 등)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 먼저 구입하고, 교부결정 이후,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·정산가능

\*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

- (국산품종 및 누드배지 확인) VI.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 및 기타사항참고 2, 참고 3을 참고하여 확인 후 정산(86쪽, 91쪽)

\* 국내개발 종균(표고) 산조701, 산조705, 참아람, 산마루1호, 산백향, 설백향 등  
국외개발 종균(표고) : 엘808, 추재2호 등

## ⑦ 송이산 가꾸기

- (지원단가) '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' 사업실행 기준단가 적용

\* '송이산 가꾸기사업 실시요령' 지침참조 (324쪽)

**⑧ 산림버섯 재배시설(비닐하우스, 냉·난방시설 등)**

- (지원요건) 최소 330㎡(100평) 이상의 산림버섯재배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
- \* 산림버섯 재배·생산 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(산림조합 산림버섯연구센터, 임업인종합연수원, 관련대학 등)을 사업시행 전까지 이수(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교육 이수자 제외)
- \* 국내산 종균을 접종한 배지로 산림버섯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
- \*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
- (지원내용) 비닐 재배사, 냉난방기, 자동화시설 등 신설 및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·보수 및 증·개축
- \* 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% 범위 내 가능/ \* 판넬형 신축은 지원한도 총사업비 84백만원/건 이하
- (표준모델) ‘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지침’ 활용
- \* 산림청 누리집>정보공개>통합자료실>“표준모델”검색 및 인건비 등 현행화 활용
- (국산품종 확인) VI.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참고 3 확인(91쪽)
- \* 국내개발 종균(표고) 산조701, 산조705, 참아람, 산마루1호, 산백향, 설백향 등  
국외개발 종균(표고) : 엘808, 추재2호 등

**⑨ 톱밥배지 생산시설(혼합기, 입봉기, 살균기, 냉각기 등)**

- \* 톱밥배지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자가소비하기 위한 시설
- (지원요건) 산림버섯재배경력 5년 이상인 ‘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’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(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, 임업인종합연수원, 관련 대학 등)을 받은 자
- \*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산림버섯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톱밥배지 생산관련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
- \* 톱밥배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『종자산업법』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‘종자업’ 등록하고, ‘생산·수입판매 신고’ 를 한 자에 한하여 지원(자가소비는 제외)
- \* 국내산 종균을 접종한 배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
- \* 건축물 신축은 지원 불가(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% 범위 내 지원), 자동화 기기·시설 지원 가능
- (지원내용) 배지혼합기, 배지처리기(건조장치 포함), 탈병기, 입봉기, 살(멸)균기, 살균대차, 종균기, 위생과 관련된 기기, 배양시설 등
- \* 배양시설의 규모는 배지생산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판단
- (국산품종 확인) VI.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참고 3 확인(91쪽)
- \* 국내개발 종균(표고) 산조701, 산조705, 참아람, 산마루1호, 산백향, 설백향 등  
국외개발 종균(표고) : 엘808, 추재2호 등

**⑩ 관수·관정시설(관상산림식물류)**

- (지원요건)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(1일 양수량 30톤 이상, 수중모터 2HP 이상)
- \* '조경수 관정시설 지원사업 실행요령' 지침 참조
- \* 재배면적이 1ha 이상인 자, 자가 포지에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
- (지원한도)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/개소
- \* 관수·관정시설 모두 포함한 단가

**⑪ 관수·관정시설(기타 품목)**

- (지원한도) 스프링클러 6,000천원/0.5ha, 점적 4,500천원/0.5ha, 관정(6인치, 일반형) 9,500천원/공
- \* 지원한도에 물탱크 가격 포함되어 있음
- \* 전기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

**⑫ 대추 등 비가림시설**

- (지원요건) 최소 330㎡(100평) 이상의 작물재배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
- (지원내용) 대추비가림시설 표준모델 활용하여 설치
- \* 대추 이외 비가림시설이 필요한 임산물 가능

**⑬ 덩굴류 유인시설**

- (지원한도) ㎡당 10천원 이내

**⑭ 재해예방시설**

- (지원내용) 방상팬, 미세살수장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신규

**⑮ 감시시설(보호울타리, 감시카메라 등)**

- (지원한도) 보호울타리 40천원/m
- \*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펜스 설치 지원 가능

**⑯ 모노레일**

- (지원요건)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5ha 이상인 자
- \* 관광·체험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 지원 제외
- (지원한도) 총사업비 기준 30백만원(견인차, 대차, 주행레일 포함)

**⑰ 하우스 시설(관상산림식물)**

- (지원한도) 하우스 시설 250천원/3.3㎡, 유리온실 800천원/3.3㎡, 아크릴 시설 1,000천원/3.3㎡
- \*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활용
- \* 임산물 재배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설치 불가(사무공간, 카페, 휴식공간 등)
- \* 하우스 시설비이며, 재해예방시설 등과 연계 추진 가능

**⑱ 하우스 시설(산림버섯, 관상산림식물류 이외)**

- (지원한도) 하우스 시설 250천원/3.3㎡
- \*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활용
- \* 임산물 재배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설치 불가(사무공간, 카페, 휴식공간 등)
- \* 하우스 시설비이며, 재해예방시설 등과 연계 추진 가능

**⑲ 임산물 저장·건조시설**

- (지원요건)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의 시설규모(연면적) 총합이 100㎡ 이하로,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
- \* 임산물 저장 용도 이외의 시설 포함 불가(사무실, 화장실 등)
- (지원한도) 총사업비 100백만원 미만

**⑳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**

- (지원한도) 상토는 공모사업에 한해 최초 1회만 지원하되, 총사업비의 7% 이내 지원
- \* ‘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’ 지침 참조(318쪽)

**㉑ 작업로 시설(신규)**

- (지원요건) 노폭은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18조의3제4항 별표3의3 ‘산지일시사용신고 설치조건’을 따르되,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및 안전시설 위주로 시설하고 노폭을 최소화할 것
- \* 위험구간 콘크리트 포장지원 가능(종단기울기 15%를 초과하는 경우, 구간거리 40m 이내)
- \* ‘산림소득작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시설지침’ 참조(331쪽)
- \* 작업로(포장) 설계는 인허가 기준에 따르며 인허가 시 작성·제출하는 자료로 대체가능
- (지원한도) km당 총사업비 15백만원 이내, 포장지원은 1km당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
- \* 단, 동 보조금으로의 포장지원은 1km 내 40m에 한하여만 지원

## ㉔ 산림경영관리사

- (지원요건) 시설규모(연면적)는 33m<sup>2</sup>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철거가 용이한 재질로 설치(복층 불가)
- \*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(작업대기·휴식 공간 면적은 25% 이하) 또는 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제24조에 따른 관리사(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)에 한하여 설치
- \*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「산지관리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건축법」 등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
- \* 동일필지(연접포함 15ha)에 대하여 이미 지원받는 자는 제외
- \* 반드시 중요재산 공시 및 사후관리(6년) 철저
- (지원한도) 총사업비 20백만원 미만
- \* 단, 포장은 1km 내에서 40m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
- (지원내용) ‘산림경영관리사표준모델 지침’ 활용(353쪽)
- \* 2개 유형(컨테이너형, 판넬형), 면적 기준 고려한 6종

### 【 유의사항 】

-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가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 기관장 책임하에 검토·확인을 통해 실단가 적용 가능
  - \* 기준단가와 다른 경우,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(농협 등 구매단가, 종합물가정보,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) 제시 시 조정 가능
- 지원단가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,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(조달 단가 우선 적용)
- 구조물 등 시설사업의 직접 시공은 지양, 가급적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서 시공
  - \* 예) 버섯재배시설, 톱밥배지생산시설, 관정·관수시설, 헨스 및 CCTV, 모노레일, 저장·건조시설 등
- 종자·종묘구입비와 인건비는 단일사업으로 지원 불가

3

임산물 생산기반조성

사업대상자	대상자 선정	선정방식	보조비율(%)				신청기간
			국	지	융	자	
임업인 등, 생산자단체	지방자치단체	자체	20	30	30	20	전년도 6~7월중

- \*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
- \* 지자체별로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

○ 사업 목적 :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(보완) 지원을 통하여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 소득증대 도모

○ 지원한도 및 단가

- 지원한도 : 총사업비 1억원 미만(생산장비+재해예방시설+작업로시설+밤나무노령목관리)
- 지원단가 : 단가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,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적용(조달 단가 우선 적용)

○ 공종별 세부내용 및 단가

① 생산장비 \* 차량은 지원 대상 아님

- (지원내용) 임산물 재배·생산 기계·장비, 지상방제장비, 친환경방제장비

· 기계·장비 : 임산물 재배·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·장비

\* (기계·장비 예) 굴착기, 4륜구동 오토바이, 동력운반차, 퇴비발효기, 선별기, 예취기, 기계화 전지기, 수집기, 잔디깎기, 동력수확기, 파쇄기\* 수액살균기, 레일형 운반기, 고소작업대, 동력분무기, 이식기, 파종기, 자동전지가위, 비료살포기, ICT 등 원격·자동시설을 노지, 시설에 접목하기 위한 시설 등

· 지상방제장비 : 병해충 방제용 장비 \* 차량제외

· 친환경 방제장비 : 포충등, 성페르몬 등 방제장비 시설

\* (친환경 방제장비 지원 주의사항)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 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 사용(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)/ \* '친환경 밤 생산 지원사업 실행요령' 참고

- (지원요건)

- 굴착기는 아래 작물별 기준면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에 한하며, 면허를 필요로 하는 굴착기의 경우 면허 구비자\*에 한하고,
- 동력운반차 중 승용형과 4륜구동 오토바이는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10ha 이상이어야 하며
- 파쇄기는 가치지기 등 잔여산물을 파쇄하여 재배지에 재투입하기 위한 용도에 한함
- 선별기는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(선별 직경 등)에 부합되는 기종에 한함

- \* 면허 구비자는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가 해당조건을 구비하고 현재 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가능하나 후 순위 배정
- \* 재배면적은 신청일 기준 산림소득작물 재배 중인 면적임

**< 굴착기 작물별 기준면적 >** 수실류 15ha, 약용·약초·산나물류 10ha,  
관상산림식물류(조경수) 5ha, 육림업 30ha 이상

- ▶ 동일·연접 시·군·구 내 임산물 재배면적 합산 가능
- ▶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, 동일 사업1)으로 이미 지원받거나, 타사업2)으로 지원받은 자 제외)

1)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/2) 전문임업인맞춤형 경영지원 및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사업

- (지원제한) 사업신청일 현재 5년 이내 유사사업으로 기계·장비를 지원받은 임업인 등, 생산자단체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기계·장비 지원 불가
- (지원한도) 굴착기는 규격 제한 없이 지원가능하나 지원한도 규격별 차등 지원 (추가비용 자부담), 친환경 방제장비 지원한도는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

**< 굴착기 차등지원 한도 >**

- ▶ 장비중량 3.5톤 미만 : 총사업비 40백만원/대, 장비중량 3.5톤 이상 : 총사업비 60백만원/대

\* 예 3.5톤 이상 67백만원대 구매 시 국비 12백만원, 지방비 18백만원, 융자 18백만원, 자부담 19백만원

- (중요재산 부기등기) 굴착기는 기계장비 운영일지(또는 장비 자체 내 기록 장치를 통한 기록)를 작성하여야 하며, 사후관리기간(구매일로부터 7년간) 동안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처분 금지 설정(부기)

**< 부기 등록 내용 >**

- ▶ 국고보조금 지급된 장비로 사후관리기간 동안 임산물 생산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
- ▶ 해당 기계장비는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상 ‘건설기계대여업’에 활용 불가

- (중요재산 스티커) 굴착기 등 3천만원 이상 기계장비는 중요재산 스티커 부착 현장 확인 후 정산 의무(96쪽, 중요재산 스티커 참조)

## ② 산림버섯 재해예방 시설 (보완)

- (지원내용) 냉·난방시설, 관정·관수시설, 방상팬, 미세살수장치 등 산림버섯 재배 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 보완
- \* 비닐하우스의 단순 비닐 교체는 불가하며, 장기성 필름으로의 교체는 지원 가능

### ③ 작업로 시설(보수)

- (지원내용)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, 시비,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보수
  - \* 노폭은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18조의3제4항 별표3의3 '산지일시사용신고 설치조건'을 따르되,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하고 노폭을 최소화할 것
  - \* 위험구간 포장지원 가능(종단기울기 15%를 초과하는 경우, 구간거리 40m 이내로 콘크리트 포장 지원)
  - \* 작업로(포장) 설계는 인허가 시 작성·제출하는 자료로 대체가능
- (지원한도) km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하되 작업난이도에 따라 아래 예시와 같이 차등적용 가능, 포장지원은 km당 총사업비 5백만원 추가 지원 가능
  - \* 예) 경사도 10°미만 총사업비 4백만원, 10~20° 5백만원, 20°이상 총사업비 6백만원
  - \* 예) 보수와 포장을 동시에 할 경우 : 작업로 보수 총사업비 5백만원/km 이내 + 위험구간 포장지원 총사업비 5백만원/km 이내(위험구간 포장 지원의 경우 별도 지원 가능)

### ④ 수실류 수형조절

- (지원내용) 밤, 뽕은감, 대추 등 수실류 재배지에 대한 강도의 전지전정(주지절단 필수), 솎아베기 등
  - \* 동일 사업지(필지 및 소유자 단위가 아닌 실제 작업지)는 5년에 1회 한정 지원 가능
  - \* 수목의 수세에 따라 강도의 수형조절 시 수목이 고사할 수 있으니 사업 선택 시 주의 必
  - \*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위한 현장점검 시 주지절단 확인 必
- (지원단가) 총사업비 기준 1,832천원/ha
  - \* 솎아베기,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·조정 실행

**IV | 청정임산물이용증진**

담당 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산림청	사유림경영소득과	사무관 전동진 주무관 이상현	042-481-4206 042-481-4207

**1 |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**

사업대상자	대상자 선정	선정방식	보조비율(%)				신청기간
			국	지	융	자	
생산자단체	외부전문기관 (한국임업진흥원)	공모	50	20	-	30	전년도 3월~5월

- 사업 목적
  -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집·저장·가공 등 유통체계의 현대화·규모화 지원으로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가소득 증대에 기여
- 사업기간 : 2년
  - \* 사업기간 및 연차별 지원 비율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조정
- 지원 내용

구분	세 부 내 용
건축(필수)	집하장, 선별장, 저장시설, 건조장, 포장장, 품질검사실, 출고장, 일반창고, 사무실·회의실, 부속시설 등
가공장비	박피기, 건조기, 절단기, 분쇄기, 여과시설 등 1차 단순 가공 장비, 세척기, 가공라인 등
선별·포장	선별기, 박스제함기, 봉합기, 자동소포장기, 컨베이어 등
유통장비	운반차량*, 냉동탑차*, 지게차, 파렛트, 기타자재 * 2.5톤 이하(사후관리 기간동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처분금지 설정 부기)
위생·판매시설	오픈수정화·건물위생시설, 홍보·전시·교육장 및 판매
ICT융복합 SW	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지원

- \* (사후관리) 조성 이후 단기소득임산물의 계절성 등 공급·유통의 제한을 감안하여 농산물 등 기타 상품을 전시·판매할 수 있음
- \* (참고사항) 산지종합유통센터(신설·보완)는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3조 제1항(별표 5)에 의한 우수관리시설(GAP시설)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을 구비하고, 취급하는 1차 산물은 GAP 등 인증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할 것

○ 지원 구분 및 한도

- (일반) 유통센터(물류/단순가공) : 국비 1~5억원(총사업비 2~10억원)
  - \* 총 출자금 1억원 이상,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,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, 조합원(농업인 주주) 5인 이상,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1/10 이상 등
- (거점) 유통센터(거점/복합가공) : 국비 5~10억원(총사업비 10~20억원)
  - \* 대단위 소비지('시'지역의 '동')에 판매기능 등을 추가한 복합거점센터는 **총사업비 40억원까지 지원 가능**(국비 20억원)
  - \* 4시간 이상은 1일, 4시간 미만은 0.5일 계산하여 연간 200일 이상 가동
  - \* 총 출자금 3억원 이상,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,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 3년 이상, 조합원(농업인 주주) 30명 이상인 법인
- (보완) 기존 지원받거나 자부담 100%로 조성한 임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현대화·규모화 지원
  - \* 기 지원 건축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[별표4]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준수
  - \* 시설 노후화로 파손, 누수 및 불능 등으로 인하여 처리능력 및 품질 저하, 사고의 위험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시설 능력증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

○ 공모사업 지원조건

-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 [별표2] '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'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
- 사업 부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하며, 생산자 단체(법인) 명의의 토지만 가능
  - \* 단, 「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[별표6] '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 관리 기준' 1.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당해 법인의 명의를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 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
- 사업 추진 중에는 추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, 최종 사업종료(정산일 기준)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
-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, 신청 및 지원 제한(다만,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은 인정)

○ 공모사업 유의사항

- '2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'24년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, '25년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코자 하는 경우, 해당 지자체에 사전승인 후 추진 가능
- 사업비를 이월한 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(귀책사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적용)

- 설계비(실시설계)는 총 사업비의 5% 이내로 반영
- 감리비, 토목 공사비는 각각 총 사업비의 5% 이내로 반영
  - \* 토목 공사비 중 부지조성(절토, 성토 등)은 지원 제외, 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
- 건조·저장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, 회의실, 교육장, 화장실, 식당, 휴게실 등은 총 사업비의 5% 이내로 제한
- 주요 기계장비는 가능한 ‘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’ 및 ‘한국식품연구원’의 보증을 받은 기계·장비를 구입하고, 품질 및 A/S 등 사후관리 철저
- 인건비는 최근 년도 시중노임단가(대한건설협회) 적용

**2**    **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**

사업대상자	대상자 선정	선정방식	보조비율(%)				신청기간
			국	지	융	자	
생산자단체	외부전문기관 (한국임업진흥원)	공모	50	20	-	30	전년도 3월~5월

- 사업 목적
  - 단기소득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2차 가공 시설·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
- 사업기간 : 2년
  - \* 사업기간 및 연차별 지원 비율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조정
- 지원 내용

구 분	세 부 내 용
건축	생산·가공시설, 저장시설, 건조장, 포장장, 품질검사실, 출고장, 일반창고, 부속시설 등
가공장비	분리기, 발효기 등 가공장비, 세척기, 가공라인 등
선별·포장	선별기, 박스제함기, 봉합기, 자동소포장기 등
위생·판매시설	오폐수정화·건물위생시설, 홍보·전시·교육장 및 판매

\* (우선순위) :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, GAP, HACCP 인증 생산자단체 우선선정 / 재료의 단순건조, 커팅, 분말 등 1차 가공사업은 지양

○ 지원 구분 및 한도

- 단기소득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 등 가공·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법인, 국비 10억원 이하(총사업비 20억원 이하)
  - \* 법인운영 실적 2년 이상, 총 출자금 1억원 이상,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
  - \* 농업인 조합원(농업인 주주) 5인 이상인 법인,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1/10 이상인 법인
  - \* 최근년도 임산물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
- 시설 리모델링은 기 지원 건축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[별표4]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준수
  - \* 시설 노후화로 파손, 누수 및 불능 등으로 인하여 처리능력 및 품질 저하, 사고의 위험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시설 능력증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

○ 공모사업 지원조건

-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 [별표2] ‘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’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
- 사업 부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하며, 생산자 단체(법인) 명의의 토지만 가능
  - \* 단, 「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[별표6] ‘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 관리 기준’ 1.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당해 법인의 명의를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 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
- 사업 추진 중에는 추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, 최종 사업종료(정산일 기준)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
-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, 신청 및 지원 제한(다만,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은 인정)

○ 공모사업 유의사항

- '2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'24년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, '25년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코자 하는 경우, 해당 지자체에 사전승인 후 추진 가능
- 사업비를 이월한 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(귀책사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적용)
- 설계비(실시설계)는 총 사업비의 5% 이내로 반영
- 감리비, 토목 공사비는 각각 총 사업비의 5% 이내로 반영
  - \* 토목 공사비 중 부지조성(절토, 성토 등)은 지원 제외, 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
- 건조·저장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, 회의실, 교육장, 화장실, 식당, 휴게실 등은 총 사업비의 5% 이내로 제한
- 주요 기계장비는 가능한 ‘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’ 및 ‘한국식품연구원’의 보증을 받은 기계·장비를 구입하고, 품질 및 A/S 등 사후관리 철저
- 인건비는 최근 년도 시중노임단가(대한건설협회) 적용

### 3 임산물 상품화 지원(소액)

사업대상자	대상자 선정	선정방식	보조비율(%)				신청기간
			국	지	융	자	
생산자(임업인), 농업경영체 (임업경영체 포함), 생산자단체, 지리적표시 등록단체·법인	지방자치단체	자체	20	30	30	20	전년도 6~7월

- 사업 목적
  - 임산물의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로 임산물 고부가가치 창출
- 지원 내용
  -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, 포장디자인개선 사업, 내·외부 포장재 지원
  - \* '임산물 표준규격' 산림청 고시 제2022-101호(2022.11.14.) 참고
  - 지리적표시 등록단체·법인은 총사업비(50백만원)의 50%까지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가능
- 지원 구분 및 한도
  - 임산물 상품화 : 국비 10백만원/건(총사업비 50백만원) 이하
  - \* 상품화 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연도의 다음연도는 지원 불가능(격년 지원 원칙 단, 수요부족 등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속지원 가능)

### 4 임산물 유통기반조성(소액)

사업대상자	대상자 선정	선정방식	보조비율(%)				신청기간
			국	지	융	자	
생산자(임업인), 농업경영체 (임업경영체 포함), 생산자단체	지방자치단체	자체	20	30	30	20	전년도 6~7월

- 사업 목적
  -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지원으로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 방지 등 유통 조직화를 위한 시설·장비 지원

○ 지원 내용

-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방지를 위한 저장·건조시설 지원
- 전처리(선별·세척·살균·예냉)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·포장장비 지원
- 단기소득임산물 물류운송을 위한 화물차량,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(버섯류, 수실류, 산나물류 등) 저온 유통차량(냉동탑차) 및 유통기자재 지원
- 임산물 저장시설(100㎡이상)을 보유한 사업대상자에게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

구 분	세 부 내 용
임산물 유통차량	<p>(화물차량)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 대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,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(도서지역 5ha 이상) 또는시설재배 면적 3,300㎡ 이상인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화물적재량 1톤 이상 / 냉동탑차 중복지원 불가</li> <li>*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으로 '24년부터 디젤엔진 1톤 차량(화물차·냉동탑차)의 생산 중단되고 1톤 LPG엔진 차량 생산</li> <li>* 지원된 차량은 사후관리 기간동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처분금지 설정 부기</li> </ul> <p>(냉동·장탑차) 신선도 유지 필요 임산물(수실류, 버섯류, 산나물류 등) 생산자에 대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,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(도서지역 5ha 이상) 또는 시설재배 면적 3,300㎡ 이상인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화물적재량 1톤 이상 / 화물차량 중복지원 불가</li> <li>*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으로 '24년부터 디젤엔진 1톤 차량(화물차·냉동탑차)의 생산 중단되고 1톤 LPG엔진 차량 생산</li> <li>* 지원된 차량은 사후관리 기간동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처분금지 설정 부기</li> </ul>
유통 장비 및 기자재	<p>지게차(2톤이하), 파렛트, 운반용 상자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지게차 지원은 저장시설(100㎡이상) 보유 임가 대상</li> </ul>
저장·건조시설	<p>살균, 세척, 예냉 등 전처리시설, 저장·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,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·시설 등</p> <p>- 임산물 저장 용도 이외의 시설 포함 불가(사무실, 화장실 등)</p>
가공·선별·포장 장비	<p>박피기, 건조기, 절단기, 분쇄기, 세절기, 선별기, 소포장기 등 가공 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삼제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임산물의 2차 가공을 통해 가공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가공장비의 지원인 경우, 가공식품의 원료 중 임산물이 50%이상 함유되어야 하며,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</li> </ul>

- \* 지자체별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운영 및 통합하여 자율적 집행 가능
- \* 저장·건조시설, 가공·선별·포장 장비 등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설보완으로 지원 가능
- \* 시설사업 등과 연계되지 않은 개별 기계 장비·기자재 구매 지원은 2/4분기 이내에 지원 및 예산집행 완료

(단, 해당연도 사업 중 2/4분기 이전 재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3/4분기 이내 집행)

- 지원 구분 및 한도 :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
  - 화물차량 : 국비 4백만원/건(총사업비 20백만원) 이하
  - 냉동·장탑차 : 국비 5백만원/건(총사업비 25백만원) 이하
  - 지게차 : 국비 6백만원/건(총사업비 30백만원) 이하
  - 유통기자재 : 국비 4백만원/건(총사업비 20백만원) 이하
  - 저장·건조시설 : 국비 20백만원/건(총사업비 100백만원) 이하
    - \* 저장·건조시설은 100㎡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
  - 가공·선별·포장 장비 : 국비 10백만원/건(총사업비 50백만원) 이하
    - \* 검증된 기계·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(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)
    - \* 탈삼제 : 국비 4백만원/kl 이내

**5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**

사업대상자	대상자 선정	선정방식	보조비율(%)				신청기간
			국	지	용	자	
산양삼 생산자(임업인 등), 생산자 단체	지방자치단체	전문기관 확인 후 지원	40	60	-	-	수시

- 사업 목적
  - 산양삼 재배과정에서 생산적합성조사와 품질검사 신청을 도모하여 산양삼 안전성 강화 및 생산자 수수료 부담 경감
- 지원 내용
  - 산양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전문기관(한국임업진흥원)의 생산적합성 조사(토양, 종자, 종묘)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건에 대하여 검사 수수료 지원
    - \* 시·군·구에서 예산 미편성 또는 예산부족으로 검사 수수료 지원이 어려울 경우, 다음연도 예산확보 후 소급 지급
- 지원 조건
  - 전문기관(한국임업진흥원)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합격이며, 해당 시·군·구에 생산신고 및 파종·식재한 자
  - 해당 시·군·구에 생산 신고한 자로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자

< 참고 > 지자체 의무사항  
 산양삼 생산신고·변경신고 사항 발생시 한국임업진흥원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함

○ 지원 한도 및 단가

- 지원한도 : 생산자(단체) 1인(단체)당 5건 까지
- 지원단가 : 1건당 38만원(2건 이상 시 실비지원)
  - \* 전문기관 검사수수료는 1건당 38만원이나, 2건 이상을 동시에 접수하여 검사할 경우 신청수수료가 감액되므로 생산자가 실제 납부한 실비만 지원

○ 증빙 및 지급·정산 방법

- (증빙자료)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 결과증명서, 세금계산서 등
- (지급·정산) 검사 합격여부 및 납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실비지원

**6**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단가적용 기본원칙 : 각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사업별 평균단가 및 지역 실정 등에 따른 지자체 건의 등을 근거로 하여 단가 적용
  - \*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,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서류 제시 시 단가 조정가능(농협 등 구매 단가, 종합물가정보,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)